

정동 롯데캐슬 136 오피스텔 분양광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33-5655)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6.04.17.)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6.04.16,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6.04.16,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중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정동롯데캐슬136.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 7992 호(2026.04.16.)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2022-중구-도시환경시행인가-2호(2024.01.12.)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591.6000㎡
 - 건축물 연면적 : 22,890.3291㎡
-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합니다.
- 공급규모 : 지하 7층, 지상 20층 1개동 중 도시형생활주택 102세대(임대 39세대 포함), 오피스텔 34실 중 오피스텔 34실
- 주차대수 : 총 138대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 7층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정화조, 빗물저류조, 기계실, 소화수조, 펌프실, 기계실
지하 6층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재활용분리수거장
지하 4 ~ 1층	지하주차장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보관창고, 방제실, MDF
지상 2층	공공시설
지상 3층	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부대복리시설, 기계실(부대복리시설), 제연헬름
지상 4 ~ 20층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내진설계 등급 : 1등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진능력 산정 기준등(제60조의 2관련))
- 입주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실)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18O	17	118.7629	42.6551	161.4180	93.3757	254.7937	16.7127
119O	17	119.6211	42.9633	162.5844	94.0504	256.6348	16.8335

■ 거주자 우선분양 호실

구분		1180	1190	합계
오피스텔	전체 호실수	17	17	34
	거주자 우선분양 호실	1	1	2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 특별피난계단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m²) × 0.3025 또는 면적(m²) ÷ 3.3058)

※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타입, 동,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각 호실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분(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MDF, 중합방재실, 생활폐기물 처리장, 진입통로, 복도, 계단, 로비, 특별피난계단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실 타입 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외벽 두께는 다를수 있으며, 전체호실 벽체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지분에는 전체사업부지내 공개공지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이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은 34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및 본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항공기, 지하철, 도로교통 및 기타 건축물의 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불가(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상기 대출협약을 통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는 대출 상환을 완료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통해 각 타입별로 접수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안양시, 동안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m²,실)

타입	라인	공급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30%)	2회(30%)	입주시
									26.08.10	26.12.10	
1180	7	1	4층	1,281,282,400	1,141,717,600	114,171,760	2,537,171,760	126,858,588	761,151,528	761,151,528	888,010,116
		5	5~9층	1,299,261,600	1,157,738,400	115,773,840	2,572,773,840	128,638,692	771,832,152	771,832,152	900,470,844
		6	10~15층	1,307,193,600	1,164,806,400	116,480,640	2,588,480,640	129,424,032	776,544,192	776,544,192	905,968,224
		5	16~20층	1,312,481,600	1,169,518,400	116,951,840	2,598,951,840	129,947,592	779,685,552	779,685,552	909,633,144
1190	8	1	4층	1,316,712,000	1,173,288,000	117,328,800	2,607,328,800	130,366,440	782,198,640	782,198,640	912,565,080
		5	5~9층	1,335,748,800	1,190,251,200	119,025,120	2,645,025,120	132,251,256	793,507,536	793,507,536	925,758,792
		6	10~15층	1,343,680,800	1,197,319,200	119,731,920	2,660,731,920	133,036,596	798,219,576	798,219,576	931,256,172
		5	16~20층	1,348,968,800	1,202,031,200	120,203,120	2,671,203,120	133,560,156	801,360,936	801,360,936	934,921,092

※ 상기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동별,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형(타입)별 상이하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동·호수 배치도 및 동호별 공급금액]을

2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20%의 범위에서 서울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서울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6.04.1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6.04.22.(수)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6.04.30.(목) 16:00 이후	26.05.01.(금) 10:00~17: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4~5F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법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6.04.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04.30.(목)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사업주체가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6.05.01.(금)	10:00~17: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4~5F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일정 및 방법은 당첨자 계약 체결 기간 전/후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198-910031-72604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203호" 당첨자 홍길동" → 1010203홍길동)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도 일괄 환불되므로, 계약 시 계약금 전액을 준비하여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은행명	구비사항
<p>공통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과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합계)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거주자 우선분양 당첨자의 경우 <p>[예시]</p> <p>공급계약서 상의 공급대금 9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인지세 7만 5천원 사업주체, 계약자 각각 납부 추후 추가옵션계약서 상의 공급대금 2천만원이 명시되어 있으면 합산한 금액 10억 1천만원에 대한 인지세 납부 기준에 납부한 인지세 7만 5천원에 인지세 10만원 추가 납부(계약자 + 사업주체 총 35만원)</p>
<p>본인계약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재외동포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여권의 경우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여권정보 증명서 함께 제출 • 전자수입인지 사본 (우체국, 은행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사본 제출) ※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p>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 외 전부)</p>	<p>※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홍보관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단,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생략) • 대리인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p>법인 계약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분양광고일(2026.04.17.)이후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이 명기되어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제외)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1차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호수를 기재(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으로 기재)하여 무통장입금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대지 내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셔야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당 사업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계약서와 추가옵션계약서에 합산된 금액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부동산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2024.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은 최초 분양광고 공급금액 이하로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확인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대출금액
 - 분양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대출을 알선 예정이며 오피스텔 60%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예정입니다.(단, 정부 정책 및 대출 기관의 사정, 계약자의 금융기관 신용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단,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 지정 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그 금액을 시행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의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부담하며, 그 이후에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금 5% 미납 시 중도금 대출 신청이 불가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정책(대출제한 등) 및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기관의 규제,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본 사업의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하며,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는 계약자의 대출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중도금 대출제한 및 대출이자 상승, 대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수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및 할인은 적용 불가합니다.
- 법인 명의로 계약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가 본인의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선택품목(무상옵션)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품목	설치위치	타입	금액
시스템 에어컨	거실+침실1+침실2+침실3	1180 / 1190	무상제공

2) 가전옵션

품목	제조사	타입	금액
4도어 냉장고	삼성	1180 / 1190	무상제공
세탁기	삼성		
전기오븐	삼성		
3구 인덕션	쿠쿠전자		
음식물 탈수기	아르펠		

※가전기기는 제품 특성상 단정이 빈번하므로, 본공사 발주 시기에 동등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계약자 안내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구체적인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의2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시행자”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분양자(계약자)는 사업관계자(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사업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지움21(유)와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내에서 현존하는 신탁재산 (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 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지움21(유)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인 지움21(유)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 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 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지움21(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 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지움21(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인 지움21(유)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각종 홍보, 인쇄물에 표시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X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본 건축물(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잔금대출은 계약자 본인이 금융권을 통해 대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신용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대출이 불가할 시에는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받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전기실 급 배기구 등의 위치에 따라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세금(취득세 등)이 증가 또는 가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외부 도로는 교통성검토서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되며 계획 및 형태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당 사업지의 대지경계 내에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공개공지가 조성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로 디자인(조경계획, 계단, 경사로, 레벨계획, 바닥패턴, 폭 등) 등의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 경계에 별도로 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대지경계와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한 계단, 경사로, 자연석쌓기 등을 비롯한 사면처리 계획이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인허가청과 협의에 따르며 시공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일부 단지 내 포장 동선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진출입구의 동선의 형태, 램프 및 계단의 규모, 형태, 마감 등의 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10m도로와 접한 주출입구앞 보도는 양측으로 약 30cm가량의 단차가 있어 슬로프 처리를 하였으며, 실시공 시 일부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36m도로에 접한 부출입구앞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레벨에 따라 일부 단차계획이 되어 있으며, 실시공시 일부계획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남측 공개공지는 단지 경계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 대지안의 공지로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주변도로]

- 단지 북측면은 동화약품 16층건물과 약 8m 내외로 인접하여 일부세대 조망 및 시야간섭이 있음, 단지 동측면은 전면에는 순화빌딩 17층건물과 약 6m 내외로 인접하며 조망 및 시야간섭이 있으며, 동측면 후면은 평안교회 주차장이 당부지 대지 약 +8m레벨로 인접하여 포디움 층의 시야 간섭이 있음.

[인허가 사항]

- 당 현장은 2022년 7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2022년 07월 22일)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됨.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계획된 경관조명 계획은 좋은 빛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인허가 및 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조경 및 옹벽 계획, 주출입구 차단기, 주동부 롯데로고표기 등은 향후 경미한 사업시행인가변경을 통해 현장 여건 및 경미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으로 시공 예정이며, 분양홍보물과 상이하게 현장 시공 될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사업시행인가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 기부채납시설의 BF인증의 결과에 따라 단지로 진입하는 구간의 경사로 및 계단 등이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 건본주택은 1190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이므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및 위치, 개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건본주택 및 인쇄물,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CG, 일러스트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 된 세대 현관문틀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임의 조성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CG, 카탈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되어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은 2026년 02월 25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된 도서를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음.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외부

[공통사항]

- 당사업지의 주변 계획은 추후 인허가 진행 및 현장여건, 그리고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카탈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더불어, 사업장이 준공될 시점에 주변부지에 들어갈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은 함께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동북쪽으로 교회주차장 부지가 있어, 저층부 일부 구간에서 조망권 간섭이 있을수 있음
- 단지 남동측에 서소문 고가차도가 2025년 9월 21일부터 철거되었다가 2028년에 재개통될 예정에 있어, 1층 출입시 및 근린생활시설, 2~3층 위치에서 조망 및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에 따른 사항임
- 단지인근에 지하철이 통행하고 있어,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으로 순화빌딩, 프레이저플레이스 호텔, 동화약품건물이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PIT층 및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당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안방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이중창 타입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안방창에 대해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함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주거 출입구 공용홀에 설치되며,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각동 출입구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및 경사도가 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음.
-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 휴게공간(옥상정원 등), 자전거보관소, 소방도로 등과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함 설치 대수 충족 및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은 2개층형의 자전거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일부 노약자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옥상 외부공간에 거주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음. 이로 인한 해당인접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3개소(주거 1개소, 비주거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층 차량진출입구 실에 설치되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음.
- 지하층 혹은 지상층에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등의 관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
- 지하주차장 출입 램프 인근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쓰레기 분리 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대지 남측에 공개공지 및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변도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은 차량소음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장 인근건물 주동이 근접하여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 1층 및 지하1층~4층 각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저층세대들은 1층~3층 근린생활시설 및 기부채납시설 수직으로 인접하여 소음, 분진,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층에 1개소(주거/비주거분리), 지하6층 1개소(비주거) 설치될 예정이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상1층에는 공개공지 1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위치는 비주거출입
- 구 앞 남측부에 위치함. 24시간 외부에 공개되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인허가청 등의 협의에 따라 형태, 디자인, 시설 등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보행로의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형태, 마감,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주동]

- 주거 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하며, 자동차 주출입구도 같은 면에 위치함. 자전거주차는 그 사이에 있으며, 자동차 입차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동선 간섭이 발생 할 수 있음.
- 비주거 출입구는 단지 남측 36m도로면에서 위치하며 주거 동선과 분리하여 사용됨. 기부채납 시설의 출입구는 단지 서측에 위치함.
- 4층 서측면 (59C, 59Ax2 Type 전면), 북동측면 (59C Type 2면), 남측면(118O, 119O Type 전면)에 포디움 상부와 접한 외부공간이 있으면, 환경권 침해 및 유지보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서측면 59A Type과 118OType 사이 복도에 면한 발코니에 오피스텔 소방관 진입창(4층~10층)이 계획되었음
- 중앙 코어 장애인겸용 승강기를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조닝을 구별하기 위한 문이 있으며, 피난 방향을 고려하여 오피스텔로 열리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음.
- 동측 59B Type에서 승강기 홀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나 다른 59Type에서는 승강기 홀까지는 평시는 상시개방형, 화재시는 비상용 차압을 위한 문을 통과하여 접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
- 옥탑층에 옥상 정원과 옥상 정원을 잇는 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양측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시야 간섭, 빛공해 및 공간의 협소함에 대한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음
- 옥상층에 설치되는 태양광 집열판의 높이와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최종사업시행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2~3층 기부채납 시설에 장애인겸용 승강기 1대가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전용되며, 2세대 조합인 오피스텔은 장애인겸용승강기 2대(비상용승강기 1대 별도)계획되었음. 6세대 조합인 도시형생활주택은 장애인겸용(비상용승강기) 2대가 계획되어 있음
- 남동측에는 36m도로가 계획되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지상층에서의 출입구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출입구로 분리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주거용 출입구 옆 필로티에 계획되어 있음
- 최상층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및 인허가시 형태 및 식재 및 시설물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옥상 외부공간에 거주자 이용이 가능한 조경 휴게공간이 조성되며, 이의 식재 및 시설물등의 구성,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각종 건축물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환풍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하여 공간의 구성이나 형태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음.

[주차장]

- 단지 내 주차장은 비주거,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성, 동선의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구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시설 이용 차량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 지하1층은 자주식 14대로 근린생활시설1대 / 기부채납시설6대 /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겸용 7대 주차장이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주차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된 주차대수를 충족하여 설치되며, 전체 주차장은 단일 부설주차장으로 통합 운영되며, 단지내 주차장의 이용, 배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정하는 규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1층 지하주차장의 천정고는 2.4~2.7m까지 확보 가능하여 택배차량 등이 지하1층 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며,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지하2층~6층 천정고는 2.3m 가능).
- 지하주차장 주차면계획으로 인해 동 엘리베이터 홀 진입부로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7층까지 7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7층의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6층~지하1층은 자주식 주차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7층의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6층에서 입출고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며, 장애인주차 3.3m, 환경친화적 자동차 2.5m, 여성우선 일반형 2.5m, 여성우선 확장형 2.6m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는 지하2층에 급속1대 / 지하2층~5층 완속7대 설치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고, 총 주차대수에서 포함되어 있음.
- 주차장은 지상1층 서측 차량 출입구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 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하1층에 별도구획 되어있으며, 지상1층 서측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진입가능함.
- 주차장 이용 및 운영 기준은 향후 제정되는 관리규약 및 관리주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커뮤니티센터와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동선이 겹치게 계획되어 있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하며,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는 지상 1층에 설치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복도 동선과 연결되어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창고 계획은 도시형생활주택 복도에 세대별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크기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고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세대창고 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배분되어 있음.
-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재활용분리수거장은 주거출입구에서 외부로 나온 뒤 자전거주차 공간 뒤편에 위치하여 사용 편의성이 열위함.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보관함은 지상1층 필로티 내부에 주거용과 별도 구획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저층부 2층과 3층 일부는 기부채납시설로 서울시청에서 사용할 예정임
- 관리사무소는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3층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샤워탈의실, 골프연습장)에 설치되며, 이로인해 상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기부채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1~3층 저층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상가 분양 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공급시설]

- 지하7층에 기계식 주차시설, 기계실, 펌프실, 빗물저류시설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7층에 정화조(주거,비주거 분리)가 설치되며 환기시설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6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3층에 기계실(부대복리시설), 제연철편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공통사항]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음. 또한 원패스 시스템 업체로부터 제공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지원되며, 이후 유상으로 변경 됨.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분양세대는 도시형생활주택(59A, 59B, 59C), 오피스텔(118O, 119O)로 구분되어 있음.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발코니 확장형)으로 산정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건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인접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가전 기기를 포함한 전시상품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제공품목 유의사항]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형 평면으로 건립되었으며, 기본형 평면 또는 가구, 가전 등 다른 추가 옵션은 선택이 불가함.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각 타입별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제공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달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공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중문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프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 홍보물을 우선으로 시공됩니다.)
- 공장 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천연석 자재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 천연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정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 아트월 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 치수는 자재의 부착두께 및 벽 보강을 위한 하지 시공분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재별 시공 두께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가구(일반, 주방)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TV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세대 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세대 내부의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의 세대 천장고는 2,400(욕실은 2,200, 공용욕실 앞 일부구간은 2,300)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재, 기기류 등)의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기준으로 우선 시공됩니다.
- 주방에 시공되는 악세사리(하드웨어, 인출장, 서랍, 주방벽 행잉 악세사리 등)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도어,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및 세부 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을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신발장, 팬트리, 복도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기본 시공 포함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 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는 제조사가 미정인 OEM 제품이므로, 제조사별로 운영중인 자재 및 하드웨어, 힌지 등의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내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모형, 카탈로그, 분양홍보물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의 설치 위치는 주방 구조에 따라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제공되는 가전(세탁기, 냉장고 등)의 경우 제품 특성상 단종 확률이 높으므로, 동등 이상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전]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시공일반]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바닥 및 벽 타일의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손끼임 방지장치가 시공될 예정으로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은 추후 시공되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 디테일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 당 사업장은 대피용 직통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어,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은 위치해 있지 않음
- 세탁기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 및 천장 일부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수 있으며, 이 경우 건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방충망 일체형 실외기루버가 설치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창호]

- 거실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이중창이 설치되며,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한쪽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다른 한쪽은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 적용으로 인해 사다리차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의 개폐방향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같은 실의 창호가 실의 크기에 따라 창호의 크기, 형태 등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118O, 119O의 침실2, 침실3번 창호는 화재 시 자동개폐되는 배연설비가 설치되며, 본 시공시 사용의 편의를 위해 벽체에 별도의 스위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배연창부위에는 별도의 창호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음 (인접창호에 설치된 손잡이는 일반 사용용이며 배연 기능과는 무관함)

[전기 및 설비공사]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및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디퓨저의 사양 및 상세 위치,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발코니)의 높이 및 위치,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안내된 욕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의 바닥 배수구의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일부구간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 난방 제어용 별도 온도조절기는 없음.(인접 침실 연동 제어)
- 다용도실 천정 속에 윗층 세대의 세탁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천정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욕실 천정 속에 윗층 세대의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천정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후면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공CD관이 매립 설치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 분기 및 배관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일부 수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어 수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쿡탑 상부 벽면에는 가스차단기가 노출로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사의 요청으로 쿡탑 측면 상판에 가스배관 연결용 홀이 타공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홀 타공 시 캡마감 예정)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천정에 장비와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도시가스 입상배관 및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는 실외기실에 시공되며,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과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및 실외기루버 닫기 등 동파예방을 위한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대 욕실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주방배기는 공동배기 방식으로 배기 입상 덕트가 옥상으로 연결되며, 옥상에는 강제 배기팬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욕실에 설치되는 세라믹 욕조 표면상 헤어라인 정도의 흠집은 제품 재질의 특성으로, 제품 하자로 볼 수 없고 교체 사유가 아님.
-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 배수 선홈통과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거실 및 각 침실에는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며, 냉매 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각 층 공용부 피트 내부에 세대용 급수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자켓형)이 설치됨.
- 옥상에는 정화조 배기팬 및 부대시설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냄새 및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지상1층~3층 외벽에는 부대시설의 화장실 및 사우나 배기용 후드캡이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냄새 및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지상3층에 제연헬륨 및 사우나 기계실이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냄새 및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 통합단자함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됨
- 입주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가스쿡탑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오피스텔 침실2, 3에서 창문에는 화재시 동작하는 배연창 설비가 설치되며, 창문의 개폐시 소방신호가 동작하여 비상방송, 경종등이 동작 할 수 있음.
- 당 현장에 시공되는 "전기차화재 자동 소화시스템" 및 "스마트 기계식주차 시스템"은 시행사 별도 공사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지지 않음

- 옥상에는 제연환 및 정화조 연도, 발전기 연도가 노출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냄새 및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공통 주의사항

-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건축사사무소 해담		(주)인곡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430,000,000		352,000,000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110111-7125720
시행위탁자	지움21(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209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6차)	110114-0258746
시공회사	롯데건설(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110111-0014764
분양대행사	(주)혁본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301호(영천동, 더퍼스트타워2차)	121111-0290824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190082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주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5호의3호에 따른 기재
 - ① 소재지(지번)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 ②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판매시설
 - ③ 규모 : 지하7층, 지상20층
 - ④ 지목 : 대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예정일 : 착공 : 2024.01.12, 준공 : 2027.04, 공급예정월 : 2027.04 예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 여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정비구역,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업체 : 하나증권 주식회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상대보호구역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p>건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 4~5F • 분양 홈페이지 : https://정동롯데캐슬136.com • 분양문의 : ☎ 1533-565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

※ 본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